

# 7월 재산세 납부 안내



## 납세의무자

- 6월 1일 현재(주택, 주택이외 건축물, 선박, 항공기) 소유자
-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,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(전 소유자)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.



## 납부기한 : 7. 31.(화) 까지

- 7월 31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%의 가산금이 부과되며
-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.2%의 증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.  
(단,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)



## 7월분 재산세

- 납기 : 7. 16. ~ 7. 31.
- 주택(1/2)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

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/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.

# 재산세 !

##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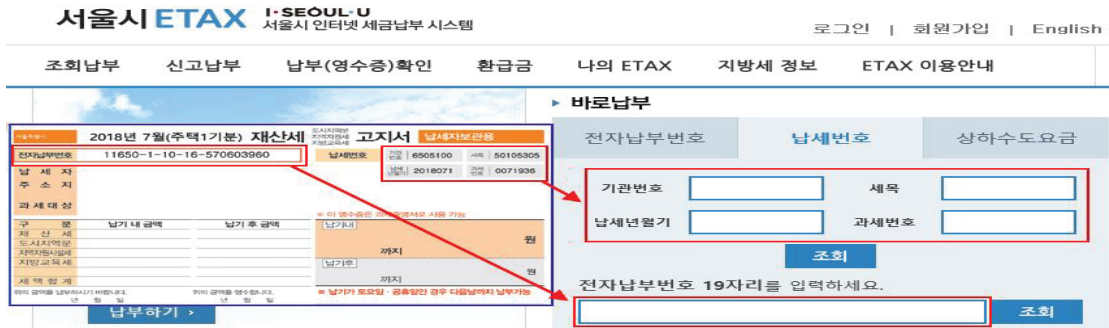
### 스마트폰 이용 납부 - '서울시 세금납부(STAX)'

- 스마트폰으로 (앱스토어, Play스토어)에서 '서울시 세금납부'로 조회·설치 후 계좌이체(우리은행만 가능) 또는 신용카드(국내 13개 모든 카드)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, PAYCO, SSG, 위비페이, 국민·삼성·현대·신한·롯데·농협 앱카드)로 납부



### 지방세인터넷(etax.seoul.go.kr) 이용 납부

- etax시스템(etax.seoul.go.kr)접속 ▶ 조회납부 ▶ 납세(전자납부)번호 입력 ▶ 납부(계좌이체, 카드, 간편결제)  
※ 간편결제(카카오페이, PAYCO, SSG, 위비페이, 6개 앱카드)



### 전용(가상)계좌 이용 납부

- 전용계좌은행 : 우리은행, 신한은행, KEB하나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우체국, 씨티은행, 농협, 수협
- 납부방법 :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무통장입금 등  
※ 타은행 계좌이체시 이체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

우리	778-347564-64-600
신한	562-04290-924043
KEB하나	119-871409-05237
국민	409-192504-49180
기업	603-456078-97-559
우체국	910853-80-679442
씨티	427-62512-921-60
농협	790-0732-5657-676
수협	084-4079-2027-207

### ARS이용납부

- ARS전용전화(1599-3900)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계좌이체(우리은행 만 가능)나 신용카드(국내13개 모든 카드)로 납부